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324

○ 발 의 자 : 박수빈 의원 외 25명

○ 발 의 일 : 2024년 12월 26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2025. 2. 11. ~ 2.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22.6%→24%)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0분의 24---------- ----------. ③ (현행과 같음)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지방자치법」제196조,「지방재정법」제29조의2 및 3을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기본적인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지방자치법」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재원조정교부금은 현행 시세인 보통세의 22.6%를 재원으로 하고, 재원의 90%를 일반조정교부금,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산출하여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음.

※ 레저세분(장외발매소 신고납부액의 20%) 및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해당 세입의 62%)은「지방재정법」제29조의 2에 따른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구의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함.

〔 조정교부금 제도 〕

□ 개 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 원 : 市 보통세의 22.6%, 레저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62%

○ 구 분 : 일반·특별조정교부금, 레저세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 일반조정교부금(보통세 22.6%의 90%) :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교부(월별)
- 특별조정교부금(보통세 22.6%의 10%) :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교부(수시)
- 레저세분(장외발매소 신고납부액의 20%) : 구별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월별)
-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해당 세입의 62%) : 구별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월별)

□ '25년 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A-B)	
	본예산(A)	본예산(B)	최종예산(C)	집행액(D)	집행률(D/C)		%
계	42,881	41,718	42,657	42,657	100%	1,163	2.8%
보통세분	42,651	41,496	42,440	42,440	100%	1,155	2.8%
일반조정교부금(90%)	38,386	37,346	38,196	38,196	100%	1,040	2.8%
특별조정교부금(10%)	4,265	4,150	4,244	4,244	100%	115	2.8%
레저세분	199.6	222	217	217	100%	△22.4	△10.0%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30.5	-	-	-	-	30.5	(신설)

□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 = 기준재정수요액 × 조정률 − 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요액

-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해 얻은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조례 제8조 제1항]

② 기준재정수입액

- 해당연도의 세입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추계하여 산정 [조례 제9조 제1항]

③ 조정률

-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정률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 [조례 제6조 제2항]

$$\text{조정률} = \frac{\text{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 합산액} + \text{일반조정교부금 총액}}{\text{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합산액}}$$

○ 그동안 조정교부율 인상 경과를 보면 2010년 의원발의안(취·등록세의 60%)과 2012년 시장제출안(보통세의 20%)의 위원회 대안으로 2014년부터 보통세의 21%로 조정되었고, 2015년 시장제출안(보통세의 22.76%)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2016년부터 보통세의 22.6%로 인상되었음.

〔 조정교부율 인상 경과 〕

발의자	발의일	내 용	비 고
김현기의원 외 13명	2007. 06. 25	- 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	- 임기만료 폐기
강희용의원 외 39명	2010. 10. 06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취·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위원회 대안〉** 보통세의 100분의 21 (2014년부터 시행) ※ 부칙에서 2013년도는 20.5%
시 장	2012. 10. 23	- 교부율을 취·등록세 합산액 100분의 50에서 보통세 100분의 20으로 조정	
김연선의원 외 19명	2013. 11. 05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	- 임기만료 폐기
시 장	2015. 10.30.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1%에서 22.76%로 상향 조정	**〈위원회 수정안〉** 보통세의 100분의 22.6 (2016년부터 시행)

○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대(2024년 26.4%)인 점을 감안할 때, 부실한 재정상태는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

- 본 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치구의 재원 보장을 강화하여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1) 재정자립도

- 자료갱신일 : 2024-08-23 / 수록기간 : 년 2000 ~ 2024
-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기본통계

항목[1/1] 구분별[28/28] 시점[3/25]

(단위 : %) 새창보기 주석보기 주소보기 행열전환 부가기능설정

구분별(1)	2024	2023	2022
본청	76.4	77.0	78.1
자치구 평균	26.4	29.5	29.4
종로구	42.0	46.7	47.5
중구	53.6	55.8	55.3
용산구	39.4	41.7	41.9
성동구	30.2	34.5	34.2
광진구	23.2	26.1	25.0
동대문구	21.6	23.8	23.7
중랑구	15.4	21.6	18.2
성북구	18.7	20.7	19.9
강북구	15.3	17.2	17.1
도봉구	17.3	20.0	19.4
노원구	16.6	16.5	16.7
은평구	16.0	18.1	18.0
서대문구	20.3	25.2	25.1
마포구	28.0	33.0	32.6
양천구	21.6	25.3	25.4
강서구	19.4	21.1	20.8
구로구	19.9	22.1	21.9
금천구	22.0	23.6	25.1
영등포구	35.2	37.4	37.3
동작구	28.4	27.4	28.1
관악구	17.7	19.9	19.6
서초구	53.2	57.3	57.8
강남구	56.1	60.4	58.9
송파구	31.9	37.4	40.0
강동구	21.9	25.6	25.4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다만, 조례상 제도 변경을 통한 교부율 인상은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재정보전 등 정책적인 지원에 비해 한번 인상한 교부율의 인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서울시의 대규모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지며 서울시 세출결산 중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3.4%로 타 지자체(6개 광역시)의 1.7배에 달하는 상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최근 5년간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 19조 9천억원에서 2023년 18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 18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득세의 증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보통세 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징수액	2021년 징수액	2022년 징수액	2023년 징수액	2024년 징수액
계		17,912,533	19,916,329	19,914,137	18,256,780	18,937,404
보통세	취득세	7,470,731	8,010,035	5,871,174	5,147,181	6,277,009
	주민세	594,603	638,590	728,680	771,181	799,050
	자동차세	1,168,621	1,164,093	1,025,804	994,650	1,007,697
	레저세	22,924	4,439	105,142	105,128	106,426
	담배소비세	605,200	594,186	588,594	576,611	553,701
	지방소비세	1,942,810	2,077,641	2,760,286	2,678,871	2,741,677
	지방소득세	6,107,644	7,427,345	8,834,457	7,983,158	7,451,844

○ 조정교부금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6년 교부율 상향 이후 10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자치구 수입의 감소로 충족도가 미달(96.2%)되었음.

- 출처: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및 제도 개편 연구"(서울연구원)

○ 2025년 예산 기준 현행 교부율(22.6%)로 조정교부금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97.2%(강남구 제외)이고, 본 개정안 교부율(24%) 적용시는 99.1%(강남구 제외)이며, 참고로 올해 예산 기준으로 충족도 100%를 가정한 교부율은 24.68%임.

[(현행) 2025년도 조정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내역]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조정교부금					
	총 액	일반조정교부금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배분 전	배분 후
일반조정교부금 등	**3,861,613**	**3,838,599**	**19,960**	**3,054**	**70.6%**	**99.2%**
종 로 구	73,015	72,301	714	-	81.4%	97.2%
중 구	18,327	17,717	611	-	93.2%	97.2%
용 산 구	82,575	82,575	-	-	79.4%	97.2%
성 동 구	126,417	126,417	-	-	69.2%	97.2%
광 진 구	159,617	159,617	-	-	63.9%	97.2%
동 대 문 구	202,106	198,403	3,703	-	58.6%	97.2%
중 랑 구	213,750	212,242	1,508	-	56.1%	97.2%
성 북 구	241,635	240,864	771	-	53.2%	97.2%
강 북 구	219,763	218,203	1,560	-	52.5%	97.2%
도 봉 구	212,629	211,238	1,391	-	51.3%	97.2%
노 원 구	281,454	281,454	-	-	53.1%	97.2%
은 평 구	236,725	236,725	-	-	55.1%	97.2%
서 대 문 구	168,298	168,298	-	-	63.1%	97.2%
마 포 구	123,918	120,864	-	3,054	75.0%	97.2%
양 천 구	172,012	172,012	-	-	63.2%	97.2%
강 서 구	213,826	213,826	-	-	64.5%	97.2%
구 로 구	202,201	202,201	-	-	60.3%	97.2%
금 천 구	150,179	150,179	-	-	63.3%	97.2%
영 등 포 구	107,854	103,750	4,104	-	78.8%	97.2%
동 작 구	164,934	164,934	-	-	63.1%	97.2%
관 악 구	232,183	231,107	1,076	-	55.0%	97.2%
서 초 구	9,847	9,847	-	-	95.6%	97.2%
강 남 구	2,310	-	2,310	-	131.5%	131.5%
송 파 구	64,788	64,788	-	-	88.3%	97.2%
강 동 구	181,250	179,037	2,213	-	66.4%	97.2%
특별조정교부금	**426,511**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교부율 24% 개정시 자치구별 배분 내역]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조정교부금					
	총 액	일반조정교부금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배분 전	배분 후
일반조정교부금 등	4,099,402	4,076,388	19,960	3,054	70.6%	100.9%
종 로 구	81,582	80,868	714	-	81.4%	99.1%
중 구	26,605	25,994	611	-	93.2%	99.1%
용 산 구	91,243	91,243	-	-	79.4%	99.1%
성 동 구	134,862	134,862	-	-	69.2%	99.1%
광 진 구	168,591	168,591	-	-	63.9%	99.1%
동 대 문 구	211,716	208,013	3,703	-	58.6%	99.1%
중 랑 구	223,415	221,907	1,508	-	56.1%	99.1%
성 북 구	251,886	251,115	771	-	53.2%	99.1%
강 북 구	228,912	227,352	1,560	-	52.5%	99.1%
도 봉 구	221,243	219,852	1,391	-	51.3%	99.1%
노 원 구	293,400	293,400	-	-	53.1%	99.1%
은 평 구	247,259	247,259	-	-	55.1%	99.1%
서 대 문 구	177,543	177,543	-	-	63.1%	99.1%
마 포 구	134,120	131,066	-	3,054	75.0%	99.1%
양 천 구	181,479	181,479	-	-	63.2%	99.1%
강 서 구	226,074	226,074	-	-	64.5%	99.1%
구 로 구	212,470	212,470	-	-	60.3%	99.1%
금 천 구	158,465	158,465	-	-	63.3%	99.1%
영 등 포 구	118,423	114,319	4,104	-	78.8%	99.1%
동 작 구	173,980	173,980	-	-	63.1%	99.1%
관 악 구	242,427	241,351	1,076	-	55.0%	99.1%
서 초 구	20,946	20,946	-	-	95.6%	99.1%
강 남 구	2,310	-	2,310	-	131.5%	131.5%
송 파 구	78,327	78,327	-	-	88.3%	99.1%
강 동 구	192,125	189,912	2,213	-	66.4%	99.1%
특별조정교부금	452,932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참고) 충족도 100% 기준(교부율 24.68%) 자치구별 배분 내역]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조정교부금					
	총 액	일반조정교부금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배분 전	배분 후
일반조정교부금 등	4,214,900	4,191,886	19,960	3,054	70.6%	101.8%
종 로 구	85,744	85,030	714	-	81.4%	100.0%
중 구	30,625	30,014	611	-	93.2%	100.0%
용 산 구	95,453	95,453	-	-	79.4%	100.0%
성 동 구	138,964	138,964	-	-	69.2%	100.0%
광 진 구	172,950	172,950	-	-	63.9%	100.0%
동 대 문 구	216,384	212,681	3,703	-	58.6%	100.0%
중 랑 구	228,110	226,602	1,508	-	56.1%	100.0%
성 북 구	256,866	256,095	771	-	53.2%	100.0%
강 북 구	233,355	231,795	1,560	-	52.5%	100.0%
도 봉 구	225,427	224,036	1,391	-	51.3%	100.0%
노 원 구	299,202	299,202	-	-	53.1%	100.0%
은 평 구	252,375	252,375	-	-	55.1%	100.0%
서 대 문 구	182,033	182,033	-	-	63.1%	100.0%
마 포 구	139,074	136,020	-	3,054	75.0%	100.0%
양 천 구	186,078	186,078	-	-	63.2%	100.0%
강 서 구	232,024	232,024	-	-	64.5%	100.0%
구 로 구	217,458	217,458	-	-	60.3%	100.0%
금 천 구	162,489	162,489	-	-	63.3%	100.0%
영 등 포 구	123,556	119,452	4,104	-	78.8%	100.0%
동 작 구	178,374	178,374	-	-	63.1%	100.0%
관 악 구	247,402	246,326	1,076	-	55.0%	100.0%
서 초 구	26,336	26,336	-	-	95.6%	100.0%
강 남 구	2,310	-	2,310	-	131.5%	131.5%
송 파 구	84,903	84,903	-	-	88.3%	100.0%
강 동 구	197,408	195,195	2,213	-	66.4%	100.0%
특별조정교부금	465,765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서울시 재정여건 관련, 행정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역단위 대규모 투자사업(강북권 대개조 투자 총 3조 8천억원 등)과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재정지원(2025년 6,724억원)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중인 바, 교부율 인상(22.6% → 24%)에 따른 추가예산(2025년 기준 2,642억원) 투입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준은 아닌지, 광역단위 사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강북권 대개조 투자계획 〕

(단위 : 억 원)

합계	기투자	2024	2025	2026	2027 이후
3조 8,264	2,051	1,308	2,161	5,892	2조 6,781

〔 '19~'25년 지하철·버스 재정지원 현황 〕

(단위 : 억 원)

연도별 예산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하철 소계	569	1,153	2,037	4,636	4,559	4,139	3,124
교통공사지원	-	-	1,000	3,458	3,550	2,300	1,000
9호선·경전철	569	1,153	1,037	1,178	1,009	1,839	2,124
버스 소계	3,113	2,075	5,006	8,608	9,381	4,376	3,600
버스 준공영제	2,915	1,705	4,561	8,113	8,914	4,000	3,200
마을버스 지원	198	370	445	495	467	376	400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또한, 서울시 재원을 자치구로 이전하는 방안은 사실상 자치구(구청장과 구의회)의 재정권으로 귀속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서울시 채무액은 2024년말 기준 11조 4천억원이고 채무비율은 21.6%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부채비율(13.77%)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최근 10년간 채무 현황 〕

(단위 : 억 원)

연 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채무잔액	34,230	34,770	37,451	38,356	55,713	81,422	107,749	118,980	114,425	114,057
채무비율	19.3%	17.8%	17.9%	16.1%	17.1%	19.9%	22.6%	20.2%	20.1%	21.6%
연간이자액	1,198	743	1,284	587	1,167	1,512	1,720	2,002	1,804	1,936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규모는 2023년 결산 기준 총 4조 6,963억원으로 광역시 평균(6,129억원)의 7.7배 수준이며, 전체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6개 광역시 평균(7.7%)의 1.7배 수준임.

구 분	교부율	(개정년도)	'23년 교부금 규모(결산기준, 억원)		
				연평균 증가율 ('18~'23년)	세출 대비 비중 (일반회계 기준)
서 울	22.6%	('15년)	46,963	7.4%	13.4%
광역시 평 균	22.03%	-	6,129	6.7%	7.7%
부 산	23.0%	('20년)	10,620	10.1%	8.5%
대 구	22.29%	('15년)	6,750	8.5%	8.2%
인 천	20.0%	('13년)	8,156	5.7%	7.9%
광 주	23.9%	('17년)	4,265	5.9%	7.1%
대 전	23.0%	('16년)	4,023	6.2%	7.3%
울 산	20.0%	('15년)	2,961	5.9%	7.0%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한편,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세 구조 개편 등을 통한 복지재원 이양 및 경제활성화에 따라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이 상향될 경우 교부율을 낮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시 교부금에 대한 자치구의 의존성 강화 및 재정확보 노력 약화, 시 재정력 약화에 따른 문제(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인프라 구축 지연 등), 상대적으로 상이한 자치구별 교부금 증가액에 따른 자치구 간 이해관계 및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아직 미약한 수준인 자치구 재정자립도(2024년 평균 26.4%)를 감안하여 자치구의 재원 보장 강화를 위해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함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광역행정 차원의 투자사업이 위축될 가능성, 서울시 채무수준,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교부율 인하 가능 여부 등 본 개정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근본적으로 자치구가 적정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및 세원 조정 등 관련 법령 개정 노력 및 자치구의 자체 재원징수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방안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참고자료 〉

전국 광역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 ※ 행정국 제출자료

○ 市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채무비율 : 20.1% *※ 25개 자치구 채무 없음*

- 채무잔액 ÷ 최종예산(일반·특별회계+기금) = 11조 4,425억원 ÷ 56조 9,156억원

○ 전국 시·도 채무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서울	13.03	12.07	20.48	19.50	19.26	17.82	17.93	16.14	17.06	19.86	22.62	20.15	20.10
부산	32.09	30.88	27.81	27.98	24.28	21.91	20.87	19.90	18.52	18.05	20.96	17.55	17.79
대구	35.82	31.84	28.14	28.19	22.64	21.53	20.47	19.36	17.92	14.99	19.38	18.91	20.27
인천	37.71	33.04	36.10	37.53	33.40	30.41	21.86	19.94	15.22	12.55	12.13	11.87	11.58
광주	20.69	20.49	20.07	21.50	21.69	21.48	19.49	17.87	14.36	13.61	15.22	17.19	20.24
대전	18.4	17.46	16.72	15.30	14.25	13.30	11.90	10.17	8.83	10.39	10.45	12.08	15.65
울산	21.71	15.77	17.12	16.05	15.46	14.43	14.53	16.34	17.08	16.26	18.53	17.56	13.66
세종	-	39.12	16.49	11.21	6.83	4.80	6.32	6.74	9.62	13.37	14.30	14.45	13.11
경기	19.65	13.01	20.13	18.94	16.46	13.39	10.74	8.98	6.63	4.53	8.92	9.12	11.63
강원	21.25	13.51	17.76	17.30	16.40	14.03	14.81	14.33	12.87	11.69	12.48	12.18	12.32
충북	19.76	8.23	15.91	15.49	14.77	14.31	13.77	12.47	11.53	10.50	10.54	10.75	12.44
충남	18.97	11.12	16.98	15.62	13.58	12.16	11.21	9.73	7.68	8.14	9.96	11.01	12.90
전북	15.1	11.27	14.17	13.87	13.02	11.45	11.64	10.33	7.94	6.92	6.61	6.62	7.15
전남	19.26	11.34	15.26	15.50	14.50	13.62	13.07	13.23	11.92	11.00	10.76	11.13	12.51
경북	15	10.36	13.35	13.12	13.05	13.0	14.15	13.76	12.29	11.98	12.65	10.34	10.38
경남	21.88	14.38	15.46	10.87	7.22	5.47	4.88	4.62	5.15	6.22	8.17	9.39	8.29
제주	22.84	21.51	16.14	14.48	11.98	9.36	5.98	5.74	7.42	10.07	10.01	14.28	14.00

* '13년부터 교통공사 도철공채를 포함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 산정